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47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 수사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지휘·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관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

체계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군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법률 제 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①·② (생략)	제16조(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u>검사</u> (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u>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u> 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 ----- <u>군검</u> <u>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u> <u>찰관</u> ----- ----- ----- ----- ----- ----- ----- -----.